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20 |
|----------|-----|

제출일자 : '99. 11. 19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99.1.29)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서초구에 납부하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자격을 소속공무원으로 확대함(안 제5조)
- 다. 이 조례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부칙 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초구수입증지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 라. 기타 :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구”라한다)의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도록 할 수 있다.

1. 조례에 의한 수수료
2. 호적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
3.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
4.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3조(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납부)(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한다)에 의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요금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요금계기고유번호

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요금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의 발행, 관리) ①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는 구청장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수입증지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둔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관, 과, 보건소 및 동에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사용하고 있는 담당관, 과, 보건소, 동에 요금계기관리책임 공무원을 둔다.

④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관리책임 공무원의 임명과 수입증지의 관리 판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 인영되는 수입증지 종류·규격 및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판매 등) ① 수입증지는 구청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판매도록 할 수 있다.

②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판매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계약기간, 비치장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입증지판매수수료) ①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한다. 다만,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매인의 판매관련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입증지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판매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제9조(수입증지의 소인)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입증지를 관련서류에 첨부하고, 첨부한 지면과 수입증지 문제에 걸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정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입증지의 교환) ①판매인은 수입증지가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수입증지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수입증지 판매공무원 또는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수입증지취급공무원 및 요금계기관리책임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손망실의 경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